

#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600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12월 16일  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, 원활한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책 등의 성격에 따라 사업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국적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정책의 성격, 예산의 목적 등에 따라 사업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함 (안 제4조제2항).

#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2항 중 “받지 아니한다.”를 “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시장은 청소년 정책의 성격 및 예산의 목적 등에 따라 구체적 복지 지원 사업의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#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## 〈 수정안 조문대비표 〉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4조(청소년의 권리와 책임) ① (생략)</p> <p>② 청소년은 <u>인종</u>·종교·성별·나이·학력·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4조(청소년의 권리와 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국적·인종</u>·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받지 아니한다</u>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4조(청소년의 권리와 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국적·인종</u>·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시장은 청소년 정책의 성격 및 예산의 목적 등에 따라 구체적 복지 지원 사업의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4조제2항 중 “인종”을 “국적·인종”으로 하고, “받지 아니한다.”를 “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시장은 청소년 정책의 성격 및 예산의 목적 등에 따라 구체적 복지 지원 사업의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#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< 신·구 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청소년의 권리와 책임) ① (생략)</p> <p>② 청소년은 <u>인종·종교·성별·나이·학력·신체조건</u>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<u>받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4조(청소년의 권리와 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국적·인종</u> ----- ----- ----- <u>받지 아니한다.</u> 다만, <u>시장은 청소년 정책의 성격 및 예산의 목적 등에 따라 구체적 복지 지원 사업의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